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초읽기!

ODS 수출입 허가제 조기시행 전망 ... Methyl Bromide 이슈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국제 규제가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국내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년 11월25일부터 4일간 열린 제14차 몬트리올 의정서 및 제6차 비엔나 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102개 의정서 당사국들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개정 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고 아르메니아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다.

우선 모든 당사국에 대해 오존층 파괴물질 ODS(Ozone Delecting Substances)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주요 HCFC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 세계관세협력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국내체계에 반영키로 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거래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불법무역 사례에 관한 정보를 오존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불법으로 거래된 양은 자국 시장에 판매되지 않은 한 소비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ODS 구분 및 라벨링을 위해 GHS(GlobalHarmonized System)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오존층 파괴물질을 파괴하는 기술을 추가해 2005년 25차 실무회의에서 환경 및 상업성을 토대로 재검토키로 했다.

기관지천식 치료제(MDIs)를 CFC-free MDIs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효율적인 전환전략과 MDIs 제조기업들의 대체제 개발노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CFC, Non-CFC MDIs, DPIs(Dry-Powder Inhalers) 판매현황(성분 · 상표 · 제조자 · 수입제품 여부), 수출을 위한 생산량, 수입국 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일본,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7국에서 2003-2004년 기관지천식치료제 MDI(Metered-Dose Inhalers)용으로 신청한 CFC는 필수용도 면제량으로 승인했다.

그동안 규제물질과 관련해 재생물질(Used Controlled Substance)과 회수 · 재생 · 재처리(Recovered · Recycled · Reclaimed)라는 용어가 혼동돼 사용되던 것도 명확히 했다. 또 냉동기 최종 사용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냉동기를 Non-CFC 장비로 전환하기 위한 촉진책 및 방해요인 등을 조사해 실무회의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의정서 규제물질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2000년 1월1일부터, 또는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했던 만큼 모든 해당국가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CFCs-11/12/114 면제량

(단위: M/T)		
구 분	2003	2004
AUS	11.0	11.0
E U	-	1 885.0
일 본	40.0	30.0
폴란드	240.0	236.0
러시아	396.0	-
우크라이나	103.8	-
미 국	-	2 975.0
합 계	790.8	5 137.0

2002년 10월5일까지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 비준국 84개 중 59국이 수출입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 중 56국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15개 개도국이 CFCs 소비량을 기준연도(1995-97년 평균) 소비량으로 동결하지 못함에 따라 의무 미준수 국가로 분류됐다.

현재 뚜렷한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지 않은 Methyl Bromide는 선진국들의 전폐가 이루어지는 2005년 이후 긴급사용(Critical Use)을 인정하게 되면 철폐 노력이 효과를 얻지 못하게 돼 이슈가 될 전망이다.